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3. 12. 17
 다. 상정일자 : 93. 12. 21
 라. 의결일자 : 93. 12. 21

2. 제안설명 요지

- 가. 설명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 내 용

90년 2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4월까지 828억원을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나 91년 은행감독원 감사 시 농협에서 차입한 기금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여신규정에 위반되어 92. 7. 31 사모공채를 2년 만기로 발행하여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인수하였으며, 경기도 예산 13382-231(93. 3. 36)호와 관련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적 추진을 위하여 조건이 나쁜 지방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장기저리의 지역개발기금 등 우량자금을 최대한 환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모공채는 이자가 년 11.5%의 고금리로서 부천시의 재정 손실이 크므로 저금리 8%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94년 초에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줄이고자 함.

3. 질의답변 요지 : 없음
 4. 찬반토론 : 없음
 5. 소수의견 : 없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역개발기금차입승인안

의안번호	226
의 결	93. 12. 24
년 월 일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1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

사 업 명	차입신청액 (백만원)	차입시기	차입 이자율	상환조건	차입선	상환재원
부천시 중동 지구 공영 개발사업	37,336	94 상반기	년리 8%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공영개발수익 금(용지매출 수입)

2. 제안사유

90년 2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조성비와 기반시설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4월까지 828억원을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나 91년 은행감독원 감사 시 농협에서 차입한 기금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여신규정에 위반되어 92. 7. 31 사모공채를 2년 만기로 발행하여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인수하였으며, 경기도 예산 13382-231(93. 3. 26)호와 관련 지방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적 추진을 위하여 조건이 나쁜 지방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장기저리의 지역개발기금 등 우량자금을 최대한 환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모공채는 이자가 년 11.5%의 고금리로서 부천시의 재정 손실이 크므로 저금리 8%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94년 초에 차입하여 상환함으로써 이자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의안번호	229
의 건 년 월 일	93. 12. 24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추진개요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 승인 : 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93. 7. 19)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확정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승인 : 제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93. 9. 9)
- 정비대상 조례 심의 의견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93. 12. 6)
 - 심의결과 : 총15건(제정 2건, 개정 10건, 폐지 3건)
 - 조 례 안 : 별 칙
- 활동기간 연장 의견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93. 12. 6)